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14호 2015. 09. 09.(수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 -----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250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
공고 ----- 2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2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 4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- 137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

『주택법』 제16조(사업계획의 승인)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9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가정지구 6블럭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
2. 사업주체 : 주식회사 드림시티건설 대표 이성규, 이옥란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6블럭
 - 나. 대지면적 : 83,777㎡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260,088.1885㎡(지하 2층, 지상 25층)
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 16개동(아파트 1,598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마. 사 업 비 : 616,291,942천원
4. 사업기간 : 2015. 09. ~ 2018. 03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1250호

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

지방재정법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)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
2. 처분내용 :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
3. 공고기간 : 2015. 9. 9. ~ 2015. 9. 23(15일간)
4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별첨
5. 법적근거 : 지방재정법 제82조,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
6. 송달내용 :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, 보관기간,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,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기타 문의사항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경리팀(032-560-4154)

2015년 9월 9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

연번	납부자	적요	예치일자	귀속대상금액	납입부서
1	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	부동산공매대금 잔액	2005-08-18	176,082	세무1과
2	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	부동산공매대금 잔액	2005-08-18	500,113	세무1과
3	채수경	5월 봉급공제금	2009-05-20	56,700	의회사무국
4	유정현외 2명	5월 봉급공제금	2009-05-20	12,420	출장소
5	최종산 외16명	5월 급여공제금	2009-06-01	98,220	출장소
6	최종산외 17명	6월 봉급공제금	2009-06-30	90,230	출장소
7	최종산외 17명	7월 급여공제금(검단출장소 산업팀)	2009-07-31	94,230	출장소
8	서구청세무과	압류자동차(56거1367)공매입찰	2009-08-10	526,000	세무1과
9	최종산 외16명	검단출장소 산업팀 대체입력 8월 급여공제금	2009-09-03	99,930	출장소
10	홍정욱	8월 봉급공제금(국민연금, 건강, 고용보험료, 소득, 주민세)	2009-09-10	22,140	건설과
11	홍정욱	9월 봉급공제금(국민연금, 건강, 고용보험료, 소득, 주민세)	2009-10-01	44,880	건설과
12	최종산외 17명	9월 급여공제금(국민,건강,고용)	2009-10-01	96,980	출장소
13	재활용선별원	10월 봉급공제금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장기요양보험료, 조합비, 소득, 주민세, 쟁의기금)	2009-10-20	60,000	자원순환과
14	최종산 외16명	봉급공제금(10월)	2009-11-02	86,430	출장소
15	안국근외 15명	11월 급여공제금	2009-12-02	83,810	출장소
16	안국근 외 8명	12월 봉급공제금(국민,건강,고용)	2009-12-24	35,571	출장소
17	행정팀	2009년 12월(2회차)봉급공제금(수송도로)-소득세, 주민세, 고용보험,	2009-12-30	26,470	자원순환과
18	황용철외4	3월 봉급공제금 (채권압류금)	2010-03-19	469,741	총무과
19	김민규	7월 봉급공제금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주민세)	2010-04-05	33,800	건설과
20	배용숙외15	2010 3월 행복상담원 활동비(소득세, 주민세)	2010-04-08	131,670	여성보육과
21	오윤선	봉급공제금(국민연금,건강보험,노인장기요양보험,고용보험,소득세,주민세)	2010-04-30	44,730	건설과
22	김민규	4월 봉급공제금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소득세,주민세)	2010-04-30	36,900	건설과
23	김기환	5월 급여공제금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주민세)	2010-05-20	3,230	공원복지과
24	이정미외 7인	2009년 고용보험정산 (고용보험료)	2010-05-26	140	토지정보과
25	장희련	5월 봉급공제금 (국민연금, 고용보험)	2010-06-01	4,440	총무과
26	김민규	5월 봉급공제금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주민세)	2010-06-03	16,570	건설과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- 1251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5. 09. 09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쉽고 자연스러운 자비법규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에는 약어 미사용 등 용어 정비
- 띄어쓰기 정비
- 상위법령 폐지(사무관리규정)
- 인용조항 정비 등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기획예산실, 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, “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”을 “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 산하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”을 “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산하기관”으로, “책임하에”를 “책임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구산하기관”을 “구의 산하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령이 정한 바에”를 “법령에”로, “소관 사무중”을 “소관사무 중 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통계조사등”을 “통계조사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사무

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”을 “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”으로, “시장위임사무는 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위임 사무는 인천광역시”으로, “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”를 “구 의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인천광역시서구 구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이행등”을 “이행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인정될때에는”을 “인정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”를 “제1항에 따라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”을 “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날로부터”를 각각 “날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변명서등 관계서류”를 “변명서 등 관계 서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10조
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----- -----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 산하기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산하기관 - 책임으로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구의 산하기관 -----</p>

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단순화·표준화되어 있거나, 전문성·능률성이 요구되어 위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사회복지, 보건, 청소년, 문화, 체육, 녹지, 공원, 교통, 통계조사 등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사무
3. (생략)
4. 기타 구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중 민간위탁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

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

-----.

제3조(적용범위) -----

-----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----- 법령에 -----
----- 소관사무 중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통계조사 등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의 -----
----- 사무중 -----

②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

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-----.

③ -----
----- 국가 위임사무
----- 는 관계 장관 -----
----- 인천광역시장 위임사무
----- 는 인천광역시장 -----
----- 구 의회의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범위 -----
-----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-----
----- 각 호
의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

-----.

③ 심의회 -----

-----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

- ① (생략)
-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8조(협약체결등) ① (생략)

-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지휘·감독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

④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7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 <삭 제>

-----.

제8조(협약체결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

----- 이행 등 -----
-----.

제9조(지휘·감독) ① -----

----- 인정될 때에는 -----

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· 처리기간 · 처리과정 · 처리기준 · 구비서류 ·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이의신청) 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해당 -----

-----.

제10조(사무편람) ① -----
----- 처리부
서 · 처리기간 · 처리과정 · 처리
기준 · 구비서류 · 서식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 날부터 -----
----- 날부터 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변명서 등 관계
서류 -----

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-----.

③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 제9조에 따라 -----
-----.

제13조(시행규칙) -----
시행에 -----
-----.